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1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자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인센티브 일몰기한 연장(안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제공 기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전화: 044-203-5225, 팩스: 044-203-4762, 이메일: jmyeong@korea.kr)

대통령령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7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 유제품을 법률 제11845호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 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 (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 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u>202</u> <u>2년 12월 31일</u> 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 ----- ----- ----- ----- ----- ----- ----- ----- -----.
7.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 제품을 2013년 7월 1일부터 <u>2</u> <u>022년 12월 31일</u> 까지 한국거 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7. ----- ----- <u>20</u> <u>25년 12월 31일</u> -----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석유산업과	
연락처	(044) 203-5225